

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02. 12(수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01. 21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01. 23

라. 상정일자 : 2014. 02. 12(제213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오병집 안전행정국장
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동항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‘행정동우회’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위법한 무효로 대법원(2012추176, ‘13.5.23)이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
- 보조금 지원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시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지원사업 중 친목도모·복지증진 사업을 삭제함(안 제2조제3호)

-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시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한 심의 절차를 이행함(안 제3조제1항)
-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 보고 등을 삭제함(안 제3조제2항, 제4조,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개정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」에 대한 대법원 판결(2012 추 176, 2013. 5. 23)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의 투명하고 적법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
- 안전행정부 「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도 퇴직공무원 단체인 ‘행정동우회’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 하고, 관련 조례의 지방재정법령 위배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토록 권고하고 있으며,
-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등 투명하고 합법적인 지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,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차준택, 류수용, 이강호, 홍성욱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4명, 찬성 : 4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: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”를 “경비를 「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</u></p> <p>제2조 (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)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생략 3. <u>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사업</u> 4. 생략 <p>제3조 (보조금의 지원) ① 인천광역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<u>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② <u>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.</u></p> <p>제4조 (사업계획등의 승인) ① 동우회는 <u>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② 동우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동우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<u>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 (결산보고 등) ① 시장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우회에 <u>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② 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, 세출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<u>다음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</u></p> <p>제2조 (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)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와 같음) 3. <삭제> 4. (현행과 같음) <p>제3조 (보조금의 지원)----- ----- -----경비를 「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 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